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7조의 요약

- 법인의 손익거래가 아니고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증가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자본거래 익금불산입항목 : 주식발행액면초과액(채무의 출자전환시 시기를 초과하여 발행된 주식가액 초과차액의 주식발행 초과금에서 제외하여 결국 익금산입한다는 뜻임),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등은 익금불산입함.
- 채무의 출자전환시 발행한 주식 중 시가초과금액은 당장은 익금산입하지는 않고 향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는 있음.

●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기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4. 감자차익(減資差益)
 5. 합병차익
 6. 분할차익
-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填)에 충당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Ⅰ. 자본거래 익금불산입

1. 본 조의 개요 및 익금불산입 범위

① 순자산증가 중 각 사업연도 소득만 과세

기업회계상 기업의 경영성과는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히 계산 및 반영하여 산출되는 당기순이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법인세법상 이에 해당되는 개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 볼 수 있다. 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기업회계상의 모든 수익 혹은 대응하는 모든 비용과 각각 견주어지는 개념인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본 법 제15조가 익금이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이라고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순자산 증가의 일종이라도 그 성격상 익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다. 자본거래나 특정평가액 등이다.

② 익금제외 항목 : 자본거래 및 기타 특별항목

예외없는 법칙은 없듯이, 세법상 수익의 개념에 대해 순자산증가설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본 조는 자산증가항목의 고유의 실질적 특성으로 인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된 수익이라 할지라도 법인의 총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본 조는 자본거래항목을 제외시키고 있으며 제18조는 특별항목 등의 익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다. 자본적 증가거래이며 경영활동의 실적결과 항목이 아닌 재산거래의 기본 성질상 과세하기에는 부적당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포괄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 등은 익금불산입한다. 그러나 채무의 출자전환시 당해법인 주식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차액 금액은 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이라기 보다는 실제로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다.

법 체계상으로 본 조는 제15조의 별도항 정도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며 따라서 익금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사례 해설 또는 미흡한 부분은 제15조의 설명을 참조하기 바란다.

- (차) 부채 감소 (대) 특별이익(채무면제익)

손익거래는 대부분의 사업 및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의 증감·비용의 발생과 인식 등이라 할 수 있다.

② 대차대조표의 자본지부

대차대조표의 자기자본 부분에는 주주가 불입한 자본금자체,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기타 자본잉여금, 재평가적립금으로 구성된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이 있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세법상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한다. 또한 이익잉여금계정 중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에 반영되는 특별항목도 순자산 증가이지만 익금불산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③ 과세소득창출의 기본수단인 사업상의 원시자본의 과세제외

법인은 자연인과 별도의 인격으로 구분되고 사업자본도 가계자본과 별도로 구분되는데, 법인에의 자본출자나 자본잉여금의 증가항목은 법인격의 탄생을 위한 기본전제이다. 이러한 자본투자와 영업활동결과 이익이 창출되고 여기에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수단은 순자산증가가 아니며, 자본불입이나 모양변경에 불과하므로 익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④ 자본충실원칙과 자본

특히 이러한 항목은 증자·합병·감자·자산재평가 등과 같이 기업확장 및 변신이라는 경영활동의 결과 발생하므로 사업활동으로 인한 과실이 아니고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행위의 결과이므로 이들은 순자산이라 할지라도 과세되는 항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세무상 자본거래로 인해 주주가 불입한 자본잉여금을 법인의 과세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다면 결국 과세된 금액만큼 기업외부로 자금이 유출되고 자본이 납입되지 않은 결과로 되어 상법상의 자본충실원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본법 제15조제1항의 「익금의 정의」에서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사실상 주주의 자본불입이라는 측면에서 동격의 성질인 주식발행액면초과액·감자차익·합병차익·분할차익 등을 익금불산입으로 하는 것이다.

⑤ 이종과세의 방지차원에서 자본거래 과세제의외

이와 같이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은 과세소득의 창출을 위한 기본재산이란 점에서 과세원칙상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통상 개인이 자금을 동원하여 법인 등을 구성함에 있어서 동원되는 자금은 경제이론상으로는 개인의 가처분소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가처분소득은 형태여하에 불구하고 이미 과세가 된 후 축적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이 자금의 움직임에 불과한 계정금액을 익금으로 하여 과세한다면 동일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II. 익금불산입의 유형과 자본증가거래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주주지분인 자본적 항목의 증가로 인한 거래는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들로써 주식발행액면 초과액(채무의 출자전환시 주식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 즉 익금산입됨),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차익, 합병차익·분할차익·감자차익 등이 있는데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 ② 삭 제 (2010. 6. 8)
- ③ 삭 제 (2010. 6. 8)

1. 자본·출자의 납입 및 감액지출

대차대조표의 자본계정 중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항목은 자본금으로 표기되는바, 상법상으로는 등기하여야 법정자본금이 된다. 이러한 자본금계정에 기재되는 자본·출자의 납입 및 증자는 본 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익금에서 제외

한다고 하였다.

관련된 설명은 본 법 제15조의 익금항목 중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출자의 납입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도 자본출자납입의 범주에 속한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면서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하여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하여 익금불산입한다는 뜻이며 그렇지 않은 초과차액은 채무면제익으로 분류되어 익금산입가능하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 제17조제1호)

① 할인발행과 할증발행의 회계처리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란 주식을 상법상의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차액을 말하는데 기업회계기준 제31조 제1호는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과목명을 표시하고 있고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정의하였다.

주식회사는 신주발행시 상법에 의거 주당 100원 이상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액면발행하거나 할증발행 및 할인발행을 할 수 있다. 법인의 자본충실의 일반원칙에 의거 상법 제330조는 액면 미달발행을 제한하여 할인발행의 사례는 거의 없으나, 상법 제417조는 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액면미달로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여기서 주식을 할인발행한 경우는 해당액만큼 자본의 납입이 없는 것이므로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계상하는데 이는 기업회계상 자본조정계정으로 자본금의 감액계정에 계상한다.

② 당해 법인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차액의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가능(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와 제2항)

그러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 본다.

예를 들어 채무출자전환시 주당 발행가(전환가) 10,000원, 시가 7,000원, 액면

가 5,000원인 경우 3,000원(=10,000-7,000)은 채무면제이익이고, 2,000원(=7,000-5,000)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된다.

여기서 원래부터 액면초과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익금불산입이 당연하지만, 시가를 초과한 초과차액은 순자산증가의 일종으로서 액면초과액에서 제외한다. 즉, 익금산입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장의 익금산입이 부담스러우므로 본 법 제17조제2항을 신설하여 익금산입 대신 향후의 결손금과 상쇄할 수 있도록 여유 규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보면 채무 10,000원, 시가 7,000원, 액면가 5,000원인 경우

◎ 회계처리

(차) 금융차입금 10,000원 (대) 자본금 5,000원
 주식발행초과금 5,000원 ① 2,000원*
 (시가초과액) ② 3,000원**

- ① 2,000원 : 일반주식발행초과금으로 당연 익금불산입
- ② 3,000원 : 법 제17조제1항단서에 의거 익금불산입되는 주식발행초과액에서 제외 → 즉 익금산입됨. 그러나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당장은 익금불산입 해주고 향후의 결손금과 상계보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해 줌(결국 당장은 익금불산입되고 ⊖유보되는 결과임)

◎ 세무조정계산서상

- ① 2,000원은 자본거래이므로 수익에도 가산되지 않았으므로 당연 익금불산입
- ② 3,000원은 익금산입이므로 세무조정계산서상 익금산입하고 유보사항에 넣은 후 향후 결손과 대응시킬 수 있도록 세무조정계산서상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대응 표시해서 당연도에 세무상의 불이익은 없음(미래로 과세이연의 뜻임).

③ **합증발행의 과세배제**

합증발행의 경우는 액면초과액만큼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다고 볼 것이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형식상 법정자본금(등기됨)은 아니라도 주주가 주금을 납입하여 발생한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법정자본금에 준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업회계기준도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잉여금으로 기장하도록 하여 세무조정 자체가 불필요하며 상법상도 자본준비금항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납입에 있어서 현물출자 및 외화납입인 경우에는 평가문제가 발생하는데 관련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는지 일반익금으로 보는지는 논란이 많다. 주식발행초과액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고 있다.

④ 외화납입준비금의 환율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익금불산입함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합작법을 설립할 때 자본을 납입하는데 당초 합작계약상 납입예정 금액의 자본금 등기 이후 실제 불입시 환율이 변경될 수 있다. 환율이 상승하여 환율평가차익이 발생하면 당해 초과납입금액은 자본거래상의 순자산증가로 보아 그 차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일종으로 하여 익금불산입한다. 이밖에 납입되는 외국자본이 외화 현금 대신 현물인 자본재의 경우, 당해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통상 통관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며 따라서 합작투자신고일과 통관일 사이의 환율이 변동됨으로 인해 환율차익이 발생한다면 이 금액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하여 익금불산입한다.

⑤ 환율차손액의 추가납입

반면에 외자도입에 따른 현금 또는 현물출자시 외화평가결과 환율차손이 발생하면 외국인투자신고 및 합작결정시 예정된 납입자본금에 미달할 수도 있는데 동 차손액만큼 자본금의 납입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상법상으로는 자본충실원칙에 의거 출자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해 출자자는 환율차손액만큼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미달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⑥ 저가의 현물출자시 차액의 액면초과액 간주

법인에 대한 자본납입을 현금대신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납입가액과 실제의 시가가 정확히 같다면 별문제가 없으나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물출자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검사한 가액으로 납입되는데 검사인의 감정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았다면 이 또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동일

한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익금불산입한다.

물론, 이는 세무상 법정자본금보다 초과계상된 시가를 익금불산입한다는 것이므로 감사인의 가격이 등록 납입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해 자본금으로 등록되는 것이다. 즉, 현물출자자산의 취득원가를 감사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 증한다는 것은 아니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2·제1호의3)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의 익금불산입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란 인수·합병당사 두 회사간에 주식전부를 받거나 주는 방식으로 일방회사가 타방 회사의 총 주식을 취득하여 완전한 모회사가 되고 타방회사는 이 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어 양 회사간 완전모자회사 관계(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주회사를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이러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 설립·전환된 완전모자회사가 이전받은 완전자회사의 주식가액(완전자회사의 순자산)과 증가한 자본금(교부주식의 액면가액)의 차익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포괄적 이전차익이라 하는데, 실질자산증가라기보다는 계산상의 차익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감자차익 (법 제17조제1항제2호)

① 감자의 유형

법인의 자본금이나 출자금을 감소시키는 경우 감소되는 자본금 등의 계정금액과 이에 대한 대가로 교부되는 자산가액과의 차액이 \oplus 이면 감자차익, \ominus 이면 감자차손이라 하는데 이 중 감자차익은 감소되는 자본금에 비해 교부되는 대가가 적어 법인의 입장에서 보아 당해 거래로 인한 순자산 증가가 있었다 할지라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감자차익의 개념과 회계·세무처리

기업회계기준 제31조제2호는 감자차익에 대해,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자본

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경우별로 회계처리하면 다음과 같다.

【회계처리】

- ① 금 1억원, 이월결손금 3천만원(액면가 10,000인 경우), 주식수 10,000주인 경우, 특정주식 3,000주의 강제 무상 소각시

(차) 자본금	30,000,000	(대) 감자차익	30,000,000
---------	------------	----------	------------

- ② 주당 5,000원을 현금지급 교부하면서 3,000주 회수 소각시

(차) 자본금	30,000,000	(대) 현 금	15,000,000
		감자차익	15,000,000

- ③ 주당 6,000원 현금지급 교부하고 4,000주 회수 소각하면서, 이월결손금 1천2백만원을 보전하면

(차) 자본금	40,000,000	(대) 현 금	24,000,000
		이월결손금	12,000,000
		감자차익	4,000,000

감자차익 4,000,000원은 이월결손금 12,000,000원과 자본감소 16,000,000원의 차액 (=16,000,000-12,000,000)임.

상기 사례의 감자차익은 기업회계상이나 세무상 자본잉여금으로 반영되는데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여기서 상기 사례 ③에서 자본감소액과 상계처리 보전된 이월결손금 12,000,000원이 세법상 적법히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10년내)이라면 그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고 이밖에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보전될 수 있다. 즉, 감자차익이 익금산입되지 않으면서도 감자차익계산과 관련된 이월결손금의 세무상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③ 감자차익의 기타 세무사항

상법 제438조는 자본감소에 대하여 동법 제434조의 정관변경의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본감소는 주주지위의 소멸이나 약화의 결과를 가져오고 채권자를 위한 담보 재산의 감소결과를 초래하므로 자본

감소절차를 엄격히 규정한 것이다.

감자에는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기준의 주식을 소멸시키는 강제소각과 주주의 동의로써 특정한 주식만을 인수하여 소멸시키는 임의소각이 있는데 상법상 모두가 가능하다. 어떤 방법이건 소각되는 주식으로부터 이월결손금 등을 감액공제 회계처리하면 감자차익이 계상된다.

특정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의 특정주주와 기타 주주가 상호 특수관계인인 경우 특정주주의 주식을 무상양수 소각하고, 여기서 발생한 감자차익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특정주주가 기타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효과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조세가 부당히 감소된 경우는 부당행위부인규정에 의거 과세된다.

④ 감자차익의 자본전입무상주의 의제배당 과세제외 등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배당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의 의제배당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본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되어 있고 기타 주주가 수령하는 무상주를 특정주주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속단할 합리적 증거가 없다면 문제가 되기도 하나 어쨌든 합리성이 없다면 거래부인으로 과세는 될 수 있다.

한편 특정주주 소유주식을 무상양도 후에 주식을 상법상의 감자절차를 통하여 소각하면 감자절차로 주식을 무상양수한 것이 아니라 특정주식 기증행위가 선행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가 아니고 단순히 소유주식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였다면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법인의 과세소득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이밖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한 익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익은 특별예외 규정없고 당연히 익금에 산입한다.

2. 기업압병 및 분할 등 거래차익

1) 압병차익 (법 제17조제1항제3호)

합병차익이란 상법상 합병으로 인한 차익으로서 순자산의 증가이지만 자본

거래로 보아 익금불산입하는데, 피합병회사의 자본지부의 각 계정금액의 차액으로 인한 것은 익금불산입 한다.

이 경우 합병차익에서 자본잉여금적인 것은 당연히 익금불산입사항이지만, 자산평가증적인 것도 순자산증가의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합병장애요인을 없애기 위해 모두 익금불산입으로 일괄규정하였다.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2000년부터는 기업회계상 합병차익이 아니고 부의 영업권(영업권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지분통합법에 의한 합병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등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

여기서 합병이란 법률적 정의로서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상 특별규정에 의거 합병당사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로 합동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인격체였던 합병당사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당해 인격이 소멸되고 합일 및 새롭게 창설되는 절차인바,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은 그 재산 및 권리·의무가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회사 또는 신설법인에 승계되며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된다.

(1) 합병의 개념·본질 및 절차

① 합병의 개념

법적 형태로서의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합일하여 하나의 회사로 되는 사단법 또는 조직법상의 특수한 계약으로 상법 제227조에 의거 회사의 해산사유가 된다. 합병에는 합병당사자인 기존의 법인이 모두 해산하고 이와 동시에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해산하는 법인의 재산과 주주·사원을 모두 흡수하는 신설합병(Consolidation)과 합병당사자인 기존의 법인 중 어느 하나가 존속하면서 해산으로 소멸하는 다른 법인의 재산 및 주주·사원을 흡수하는 흡수합병(Merger)의 2 가지 형태가 있다.

그러나 신설합병은 절차가 복잡하고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거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② 기업결합의 제반방법

기업확장 및 결합의 방법으로는 합병 이외에 지분취득, 부채부담조건부 경영권인수(Leveraged Buyout : L.B.O.), 경영자 인수(MBO), 영업양수·도 및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법적인 조직변경 등이 있는데 합병차익의 개념은 상법상의 합병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합병과 유사한 개념으로서의 영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외관상 합병과 유사하나 이는 2 이상의 법인간의 사업결합 정도로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재화 및 용역의 매입·매수 범주에 속한다.

③ 합병의 본질론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합병은 2 이상의 회사가 합일하는 상법상의 특별계약이라는 법률적 측면 이외에 경제적으로는 합병당사회사가 경제적·실질적으로 통합되어 단일기업으로서 경영자산의 포괄적 승계 및 경영조직의 재편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 및 역학관계의 차원에서 합병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이나에 대한 해답이 도출되는데 법적·회계학적 및 조세법적인 모든 차원에서 인격이 합일되어 승계되는 지분풀링설과 현물을 출자하고 주식을 교부받는 현물출자설의 2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첫째, 지분풀링설(Pooling of Interest Theory)은 인격승계설로서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합병을 통하여 각자의 지분과 계산을 공동계산 혹은 풀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이론이며, 둘째가 매수설(Purchase Theory) 또는 현물출자설로서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산출한 순자산가액을 합병법인이 매수(혹은 피합병회사의 주주가 합병회사에 현물출자함)하는 행위로 보는 이론이다. 어느 이론 또는 방법의 선택이나에 따라 회계·세무처리 및 합병차손익의 계산구조가 달라진다.

▣ 인격승계설과 현물출자설의 차이점 ▣

항 목	인 격 승 계 설(지분통합법)	현 물 출 자 설(매수법)
기업인수·합병 회 계처리준칙	지분통합기업결합	매수기업결합
피합병회사의 자산 과 부채 평가	장부가액대로 승계·반영함.	공정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반영함.

순자산가액과 합병대가(=합병교부금+합병주식)와의 차이	순자산과 합병대가가 일치하므로 영업권이 없다.	합병대가와 장부가액의 차이 때문에 영업권(합병차손)이나 부의 영업권(합병차익)이 당연히 생긴다.
피합병회사의 법인격 및 주주 관계	그대로 유지됨.	소멸되고 재산적 가치화 됨.
주로 발생하는 상황	계열기업·특수관계기업간 합병	독립된 제3자 기업간 합병
합병절차 및 제반과정	장부가액대라이므로 객관적이고 간단	상법상 현물출자로 보아 변태설립 절차하에 허가받고 자산을 평가 출자하므로 복잡
청산소득 발생여부	장부가액대라이므로 이론상 청산소득 없음.	시가평가로 많은 금액 발생
자본충실화의 개념	실제가치를 초과한 자본 금액이 교부되기도 하며 한계가 없으므로 혼수자본의 가능성 있음.	실질적 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내에서 자산평가증되는 결과임.
피합병회사의 기존 잉여금의 승계	장부가액에 의거 액면 그대로 승계되며 항목 다양(그대로 반영)	그대로 승계 안되고 합병차익이라는 개념으로 되어 부의 영업권 개념임.
당기순이익 및 순손실	그대로 승계되며 기중에 합병되어도 해당기간 전체의 순이익이 승계됨.	기타의 것과 포괄되어 승계되지 않음.
합병관련비용	합병연도에 합병법인의 당기기간비용으로 처리함.	비용의 성격에 따라 자산(자본적 지출) 및 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처리, 합병대가에 포함.
합병시 작성하는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작성됨.	손익계산서는 불필요하고 대차대조표만 작성됨.

④ 합병의 목적

기업은 이윤극대화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합병을 하는데 합병의 목적이나 동기는 자본집적·대형화·국제경쟁력 강화·기술혁신 및 경영다각화와 같이 경영을 확대하는 방향의 적극적 목적과 기업의 위기극복·활로개척·재무구조 개선 및 조세절감 등과 같이 경영의 축소 방향으로 가는 소극적 목적이 있다. 특히 불경기에는 계열기업간에 소극적 목적의 합병을 하며 호경기에는 적극적 목적의 합병을 한다.

이와 같이 합병은 합병당사자가 기대하는 목적·동기·효과 및 합병당사자의 자본구조·투하자본의 증액여부 및 당사자간의 계열관계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그룹 계열간에 이루어지는 모자기업·계열기업간 합병인데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크게 대립되지 않으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경우에 따라 어느 일방이 합병대가·합병비율 및 합병교부금의 측면에서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⑤ 합병의 형태

앞에서 언급한 법적 개념하에서의 신설·흡수합병외에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합병은 수직적·수평적 합병과 콩그러머리트합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적 합병은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동일 시장 또는 동일 산업에 존재하고 있는 독립된 기업간의 합병이 일반적으로서 이러한 합병은 공급의 탄력성은 크나 수요의 탄력성은 적은 재화산업의 경우에 흔히 이루어진다. 이 수평적 합병은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시장활동, 즉 판매조직망의 강화, 판매경로의 일원화, 광고 및 선전에 있어서 그 결합 효과를 촉진할 수 있으며 또한 생산측면에서 양산체제를 구비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수직적 합병이란 동일한 최종 제품을 생산하나, 합병기업과 피합병기업간의 제품생산상 상이한 단계에 있는 기업간의 경제적 기능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제품의 판매선이나 원재료의 공급선에 있는 독립된 기업간의 합병을 뜻한다. 수직적 합병은 합병기업과 피합병기업이 서로 한 제품의 생산단계를 달리하고 있어 경쟁적이지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어 생산설비 내지 기술이용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일괄생산의 이점을 달성할 수 있다.

콩그러머리트합병(Conglomerate merger) 혹은 집군합병이란 합병기업과 피합병기업의 제품이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의 합병으로서 원료·생산설비·생산기술·최종 수요면에 있어서 상호기능적으로 관계가 없거나 별개의 제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간의 합병을 말하는데 합병기업과 피합병기업이 각각 그들의 시장점유도와 생산체제면에서는 결합효과가 없으나 산업분야에 있어서 기업활동의 다양화(Diversification)와 기업경영의 다각화를 이룩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경기가 좋지 못한 어느 한 사업이 침체

될 때 이에 대한 타개책의 한 방법으로서 기업의 생산 판매면의 관련성이 없는 기업을 흡수하는 경우가 많다.

앞의 합병유형은 대부분 2개의 회사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3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도 있는바, 갑·을·병 3사가 합병을 함에 있어 갑은 존속회사가 되고 을, 병이 해산회사가 되는 경우 합병계약을 갑과 을·갑과 병 이렇게 따로 따로 하여 합병을 각 개별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갑·을·병 3사가 하나의 합병계약에 의하여 합병하는 경우는 3자 모두가 하나의 계약서로 합의해야 유효하다.

⑥ 합병의 절차

합병에 관한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i) 합병계획의 수립 : 합병에 관한 합의 후 상법 제175조에 의거 합병설립위원을 선임하며 제반 법정기간을 검토하여 합병일정표를 작성한다.
- ii) 합병계약서의 작성 : 상법 제523조에 의거 주식·자본금·합병비율 및 신주발행방법·합병주총기일·합병할 날·이익배당기산일·권리의무승계·종업원 인수·임원선임·상호변경·정관변경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한다.
- iii) 합병대차대조표의 공시 및 합병계약서의 주주총회승인(상법 제522조 등)
- iv) 채권자 보호절차 : 상법 제232조에 의거 1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 이의제기를 공고함(공고는 결의일부터 2주내).
- v) 신주의 교부 및 주식의 병합절차
- vi)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적용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vii) 합병의 실행 및 합병결과에의 보고총회
- viii) 합병의 등기·상법 제528조에 의거 소멸회사는 해산등기,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 ix) 해산회사의 청산소득신고 및 의제배당문제 해결 등

⑦ 합병과 영업양수·도의 차이

참고로 합병과 가장 유사한 영업양수·도를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구 분	합 병	영 업 양 도
준거법의 차이	상법상 특별규정으로 필수적 기재의무있는 합병계약서 작성	상법상 채권계약임. 특별한 형식이 불필요
청산절차유무	청산절차 반드시 필요	청산절차 불필요
이전되는 영업범위	전체합병, 전체양도	일부만의 영업양도 가능
주주(사원) 양도	주주도 합병회사에 이전	주주는 이전 안됨.
이해관계자 보호	채권자 보호절차 필요	불필요
양도 이행의 범위	자산·부채의 일괄승계로 개개의 권리·의무 승계절차 불필요	각 자산·부채 등 개별승계절차 필요
영업의 동질성	합병 후 영업의 동질성 유지필요	불필요
등기여부	합병등기가 필요(일괄 등기)	개개 자산의 등기만 필요
경업피지의무	경업피지의무 없음.	일정 기간 경업피지의무 있음.
무효절차	무효는 일정한 자가 특정기간내에 소의 제기로써가능함.	무효의 주장은 제한없음.

(2) 합병차익(부의 영업권)의 개념과 계산공식

합병차익의 개념에 대해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1999. 3. 25, 금융감독원)은 종전의 합병차익을 부의 영업권이란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인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999. 3. 25, 금융감독원)

9. 영업권

가.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10. 부의 영업권

가. 매수일에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부의 영업권](= 종전의 합병차익)

=매수회사지분-매수원가

=취득한 재산가액
 -[승계한 채무액+합병교부금(=주주에게 지급금액)
 +합병교부주식의 액면가액(=자본증가액 및 초과금액)]

합병차익에 대해 본 법상 특별한 용어 정의는 없으나 기업회계의 개념을 준용하면 된다. 단, 합병차익(부의 영업권) 중 그 차익의 원인이 피합병회사의 자본지부에서 법정교부자본금 및 합병교부금을 차감한 계정처리상의 차액이면 익금불산입한다.

피합병회사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합병차익은 각각의 피합병회사별로 계산하여야 하며 전체를 합산·가감해서는 안된다. 앞의 합병차익 계산공식에서 승계한 재산가액의 범위와 이의 평가방법 및 평가액, 승계한 채무액의 범위와 평가방법·평가액, 합병교부금액의 산출방법 및 합병교부주식의 액면가액 결정이 중요하므로 이를 각각 설명한다.

(3) 합병차익계산관련 자산·부채 및 기타의 개념과 평가방법

① 합병시 승계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 평가

합병시의 승계자산과 부채에 대해 재무회계상으로는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7조에 의거 주로 매수법상의 개념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합병차익은 모두 익금불산입한다.

즉, 2009. 12. 31. 법률개정에 따라 합병차익은 익금불산입하되 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차익 부분은 종전에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그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과세이연 효과가 불완전하여 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합병차익을 모두 익금불산입하도록 하여 2010. 7. 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여러 유형의 세무상 준비금과 충당금의 세법상 승계를 인정하고 있고 장부가액대로의 합병도 인정하는 것은 지분풀링설에 입각한 개념인데, 현실적으로 합병시 자산평가차익이 크지 않고 회사내부 유보잉여금관련 사항이 대부분이므로 합병차익의 익금불산입으로 포괄규정된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은 합병에 대해 어느 한 이론만 준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계정과목별로 기존의 판례·예규 등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평가문제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계정과목순으로 해설한다.

② 유가증권 등은 시가 및 합리적 가액 등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가로, 시장성 없는 주식은 합리적·객관적 가액, 채권 등은 채권금액에서 대손·회수비용차감 후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재고자산은 순실현가액 \ominus 정상이익을 뺀 금액 등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시 유형자산의 평가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매수설에 근거를 두는데, 시가나 공신력있는 감정가액 중 객관적·합리적 가격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는 부당합병 거래금액만 아니라면 장부가액 등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병법인의 유형고정자산 취득원가로 계상하여도 인정된다. 다만, 특별부가세 목적으로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원가가 합병후 매각하는 경우도 양도차익계산 원가로 적용한다.

④ 합병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와 평가차익반영

합병시 피합병법인 및 소멸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대내외적 권리의무와 기업회계상의 자산 및 부채 등의 법률상, 장부상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증 혹은 평가감액으로 계산되어 영업권(구합병차손) 및 부의 영업권(구합병차익)계정으로 반영된다. 그러나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의 객관적 권리·의무에 대한 금액이 아니므로 승계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세무조정에 의한 익금 및 손금 등의 유보금액은 자산·부채 및 손익에 대하여 세법 적용에 따른 세무조정에 의하여 발생된 금액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권리와 의무개념금액은 아니며 세법적용에서만 의미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조정계산서상 반영되어 있는 피합병법인의 대부분의 유보사항(⊕유보 혹은 \ominus 유보)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세무상의 이월결손금 등의 금액은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게

서의 승계사업이익에서만 공제가능하도록 99년부터 본 법 제45조가 신설 규정되었다.

⑤ 합병전 이월결손금을 각각 자기고유의 승계사업 소득에서만 공제함

세무조정사항이나 세무상 이월결손금자체로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음의 원칙이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의 이익상쇄효과를 살리기 위해 거꾸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이익이 있는 법인을 합병하는 방향의 역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법 제45조는 제1항에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피합병법인의 승계사업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합병법인 자체의 소득에서만 공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합병하더라도 합병법인·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이 서로 상대방 승계사업 소득에서는 공제되지 못하도록 하여 절세목적의 합병유인을 방지하였다.

즉, 합병법인은 각각의 결손금을 각각 기존승계사업의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합병은 합병고유특성의 가치가 있는 경우만 의미가 있으며, 합병당사법인의 결손금을 서로 상대방의 향후 이익·소득으로 상계 차감공제하려는 절세목적의 합병은 의미가 반감되었다.

⑥ 합병교부주식

합병은 피합병회사의 제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행위이므로 소멸법인의 주주는 존속법인에 현물출자를 하는 개념으로 이에 대응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교부받는다. 이를 합병교부주식이라 하는데 합병당사회사의 1주당 실질적 가치비율에 따라 합병계약에서 정하는 합병비율에 의거 환산된 주식을 교부받는다.

합병교부주식가액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증가 및 신설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구성한다.

⑦ 합병교부금

합병시 피합병회사의 주주 등은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앞에서 설명한 합병시 교부하는 주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합병비율, 주식가액비율 등의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함에 있어서 일시적 차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합병교부금이라 한다.

(4) 부의 영업권(구합병차익)의 발생원인별 유형과 세무 및 외계처리 방법

① 합병차익 발생유형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10조는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합계인 매수회사의 지분이 합병신주와 합병교부금 합계액인 합병대가 등의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부의 영업권(구합병차익)으로 한다.

합병차익의 발생원인은 통상 다음의 네가지로 대별되는데 첫째, 피합병회사의 교부주식금액을 줄임으로 인한 합병 감자차익 둘째, 피합병회사에 계상되어 있던 자본잉여금 셋째, 피합병회사에 계상되어 있던 이익잉여금 넷째, 피합병회사의 자산을 적정시가로 평가증함으로 인한 자산평가증익 등이다.

② 합병시 자산평가증액은 임의평가 익금산입

종전에는 합병거래에서 자산가액을 기존가액보다 평가증하여 발생한 합병차익금액은 일반적 익금불산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산평가증은 익금산입하면서 대응순금산입허용 하였으나 그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과세이연 효과가 불완전하여 2010. 7. 1부터 전면적으로 익금불산입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법인이 비록 합병시점에는 과세목적상 자산을 평가증하여 승계하지 않고 합병된 이후 합병법인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에 따라 임의로 평가증하였더라도 익금불산입하며 자산으로도 계상하지 않는다.

③ 합병차익의 계산순위

4가지 요소로 구분되는 합병차익의 발생원인 중 4가지 요소가 모두 합병차익으로 되면 상관 없으나 합병차익과 합병차손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문제가 된다. 즉, 상기의 사례에서 이익잉여금 1억원 대신 이월결손금

이 5억원(A안, B안은 2억원, C안 3억원)이었다면 합병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단위 : 원)

구 분	A	B	C
자 산 평 가 증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합 병 감 자 차 익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자 본 잉 여 금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이 월 결 손 금	(500,000,000)	(200,000,000)	(300,000,000)
합 병 차 익 (손)	(300,000,000)	100,000,000	0

위의 사례에서 A, B, C의 모든 경우에 익금산입될 금액은 1억원이다(대신에 동액이 손금대응된다).

(5) 합병시의 자기주식과 포합주식

① 개념 및 회계처리

우리나라 현실에서 법인간 합병은 대부분 특수관계인간 혹은 재벌기업상호간 합병이므로 합병당사회사는 상호간에 상대방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피합병회사가 합병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합병회사의 주식인 자기주식과 합병회사가 합병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인 포합주식으로 구분되는바,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일단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후 소각하는 경우는 당해 장부가액을 합병대가로 하고, 합병 이후 처분하면 당해 처분손익은 합병차익 또는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② 자기주식소각은 합병차손

합병차익이 있는 합병에서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결과 장부상의 취득원가가 감소되는 자본금보다 큰 금액은 소각손실이 되는데, 이를 합병차손 혹은 영업권으로 차변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합병차익 계정금액을 차감하여 대변금액으로 줄여준다. 반면에 합병시 아예 합병차손이 계상된 경우의 자기주식 소각손은 그대로 합병차손으로 차변분개하여 합병차손의 총금액을 증가시킨다. 이밖에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는 당해 포합주식만큼 더이상 신주교부

하지 않는다면 피합병법인의 총자본금 지부와 포함주식 장부가액과의 차액이 합병차익 혹은 합병차손이 된다.

(6) 합병차손(영업권)인 경우

① 영업권(구합병차손)의 개념

영업권(합병차손)은 부의 영업권(합병차익)의 발생과 반대되는 가격평가시 발생되는데 이는 다음의 산식으로 표시된다.

[영업권(합병차손)]

$$= \text{승계한 자산가액} - (\text{승계한 채무액} + \text{합병교부주식의 액면가액} + \text{합병교부금})$$

상기 산식의 결과치가 음(-)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영업권(합병차손)이다.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9조는 매수원가 중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병대가가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이다. 이 영업권 금액을 바로 종전에는 합병차손으로 계정처리하였다.

영업권은 재무회계상 최장 20년 이내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법인세법상 손금용인(5년내)될 수 있는 영업권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다르다.

② 영업권의 발생원천

영업권 금액인 합병차손은 순수한 초과수익력적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적 자산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실질적인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의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사례】

-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가 다음과 같고 순자산가액 3억원을 4억원으로 평가하여 합병하면서 합병교부신주의 액면가액이 5억원이면 합병차손(영업권)은 1억원(=5억원-4억원)이다.

		피합병법인의 B/S		
순	자 산	300,000,000	자본금	200,000,000
			자본잉여금	150,000,000
			이월결손금	(50,000,000)
		<u>300,000,000</u>		<u>300,000,000</u>

⇒ 여기서 합병차손은,

• 자산평가증(4억원-3억원)	=1억원
• 계정차이로 인한 합병차손 (5억원-3억원)	=△2억원
	<u>△1억원</u>

		합병후 B/S	
순자산	4억원	자본금	5억원
영업권	1억원		
	<u>5억원</u>		<u>5억원</u>

사례에서 전체 계정상으로는 영업권(합병차손)으로 계상되며 자산평가증인 1억원 만큼은 합병차익개념인데 익금불산입사항이다. 또한 합병차손의 잔액은 1억원으로 계산되지만 그 발생원천 중 초과수익력으로 인정된 금액은 2억원이다. 이 중 5천만원은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인식한 것이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순수한 초과수익력이므로 세무상 영업권은 당해 금액의 범위(1.5억원=2억-5천)내에서 상계한 후의 장부상 잔액인 1억원이 될 것이다. 즉, 이는 세무상 자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으로 감가상각된다.

만일 상기의 사례에서 자산평가증을 하지 않고 5억원을 교부하였다면 차액인 2억원이 영업권으로 인정되는데 2억원은 이월결손금 5천만원과 순수한 초과수익력 1억5천만원으로 구분되어 이 중 1억5천만원만 자산성을 인정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다.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계상된 5천만원의 영업권은 세무상 자산성이 없어 감가상각되지 않는다.

(7) 합병시의 계반 세무문제 개괄

합병과 관련되는 세무문제는 합병차익 및 합병차손 이외에도 피합병법인의 의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합병법인의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계산,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문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 배당소득세 과세, 자기주식 세무처리문제, 영업권 평가문제, 지방세 과세문제 및 산업합리화에 따른 합병의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문제 등이 있다.

①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및 중간예납 법인세

법인세법 제8조제1항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의제하여 별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병등기일로부터 3달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법인세법 제63조제3항은 합병법인의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에 대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들의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각각 중간예납의 직전 사업연도로 보아 이들을 합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법인세과세 문제

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법인은 그 자산을 상대방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하여 합병대가총액⊕합병등기일의 자기자본으로 계산되는데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당해 소득에 일반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법인세를 산출한다.

[양도소득]

- = 합병법인의 교부주식 등 합병대가(신주가액 : 액면가)
- + 포합주식 취득가액(-교부주식 : 액면가)
- + 합병교부금 [합병제비용 대납액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납액]
- 자기자본총액 [납입자본금
+ 잉여금-이월결손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범위내)
+ 법인세환급액 등
- 세무상 장부 미계상의 합병차손
+ 신고 후 미결정 재평가적립금 : 추후 결정시]

③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소득세과세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는 내국법인의 주주나 사원 기타 출자자가 소유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의 주주가 되거나 합병교부금 등을 받을 경우와 같이 유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당해 주식을 양도한 때까지의 총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주식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시가차액, 유보이익잉여금의 증가액은 순자산증가의 일종으로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의제배당액은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된다.

◎ 의제배당액 = (합병교부주식 + 합병교부금) -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당초 주식 취득원가

④ 자기주식 세무처리

합병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처분손익에 대해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및 손금으로 하지 않으나 일반적 매각차손익은 익금 및 손금산입 사항이 된다. 자기주식자본금이라 해서 세무계산상 일반적인 의미의 자기자본에서 빠지는 않는다.

⑤ 합병에 따른 지방세 과세문제

지방세법 제110조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별도의 취득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주주입장의 취득세도 부과하지만, 비과세·감면인 경우는 취득세도 비과세되도록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규정되어 있다.

등록세는 재산권 등의 권리보존과 이동사항을 정부의 공부상에 등재하는 것이므로 과세된다.

지방세법 제138조는 서울특별시와 주변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의 대도시 지역내의 법인 등기에 관한 세율을 일반등록세의 3배로 하여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합병 후의 존속법인이 되는 경우와 신설합병으로서 법인이 신설되는 경우가 등록세 3배 중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립 후 5년 경과 법인과 5년 미경과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는 5년 경과 법인이 합병 후 존속되는 법인으로 함이 지방세 절세목적에 유리하며, 신설합병은 부동산 등이 별로 없는 법인에게 권고되는 방법이다.

⑥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 승계여부

전술한 바와 같이 피합병회사의 이월결손금은 통합손익 중 승계사업이익에서만 공제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승계 공제되지 않고 소멸되고, 합병회사의 이월결손금도 합병법인의 본래 승계사업 소득에서만 공제된다. 과거에는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전체 통합 손익에서 공제되어 세무상의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합병법인이 됨이 절세목적상 유리했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45조가 합병당사법인의 결손금이 각각 승계사업 소득에서만 공제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차이가 없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사항 중 당기에 공제 안되면 이월되는 것도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액의 경우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 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는 합병법인에 대해서도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8) 합병외계와 기업인수 · 합병외계처리준칙

합병차익(기업회계상은 부의 영업권)은 결국 각 자산·부채의 항목에 대한 회계처리와 평가방법에 의거 결정되는데 기업인수 및 합병이라는 법적 행위의 개념이 중요하므로 별도의 회계준칙이 필요하여 금융감독원이 1999년 3월 25일 준칙을 제정하였다(증권선물위원회는 1998년 4월 1일(전 증권관리위원회(86년 12월 16일)) 이를 제정하였고 이를 전면 개정함).

이론적으로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이나 채무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합병의 본질 부분에서 설명한 지분풀링설이나 매수설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합병의 본질을 매수설로 본다면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자산 및 부채는 그의 공정한 시장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반면에 지분풀링설로 파악한다면 피합병회사의 장부가액대로 승계하여야 하는데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은 원칙적으로 매수설의 입장에서 각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한적으로 지분풀링법도 용인하고 있다.

관련법령

◇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회계기준위원회 2009. 12. 9)

1. 목 적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에 의거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에 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준칙은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에 적용한다.

- (2-1)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은 타회사 주식의 인수, 기업 간의 합병, 영업양수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그 형태에 상관없이 거래의 본질이 실질적 기업결합에 부합하는 경우 이 준칙을 적용한다.
- (2-2) 기업결합은 주식의 교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의 지급, 사채의 발행 및 부채의 인수, 기타 자산의 지급 등을 통하여 기업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력의 변화를 초래하거나 경제적 실체의 변경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포함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기업결합”이란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사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거나 통합함으로써 별도의 독립된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 나. “매수”란 한 회사(이하 “매수회사”라 한다)가 다른 회사(이하 “피매수회사”라 한다)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그 대가로 자산의 이전, 채무의 부담 또는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 다. “지분통합”이란 결합에 참여하는 회사(이하 “결합참여회사”라 한다) 중 어느 일방도 매수회사가 되지 아니하고 각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이 결합참여회사들의 자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결합하여 그 결합된 실체에 내재된 위험과 효익을 지속적으로 상호 분담하는 형태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 라. “매수일”이란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말한다. 즉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이 매수회사로 이전되고 매수원가가 확정되어 기업결합이 사실상 완료된 날을 말한다.
- 마. “지분통합일”이란 지분통합에 의한 기업결합이 사실상 완료된 날, 즉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이 결합된 실체의 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말한다.
- (3-1) 매수일이란 매수회사가 기업활동에서 생기는 효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피매수회사의 재무·영업정책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된 날이다. 매수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법적절차의 종결이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은 아니다.

4. 기업결합의 구분

- 가. 기업결합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수와 지분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매수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매수법, 지분통합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지분통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나. 결합참여회사 중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있는 기업결합은 매수기업결합으로,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없는 기업결합은 지분통합기업결합으로 한다.
- (4-1)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대가로 상당한 수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분을 매수당한 회사의 주주가 매수회사를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매수회사이지만 실질적인 매수회사는 의결권 등을 행사하여 결합된 실체를 현재 지배 하고 있는 주주가 속한 회사이다.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지분을 매수당한 회사가 매수회사로 되어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매수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5. 지분통합 기업결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결합은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없는 지분통합기업결합으로 보고 지분통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 가. 결합참여회사 중 주식발행회사가 결합을 위하여 발행한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이 상대방 결합참여회사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의 90% 이상과 교환 또는 통합되어야 한다.
 - 나. 결합참여회사간 자산의 공정가액에서 부채의 공정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의 공정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
 - 다. 각 결합참여회사 주주들간의 결합전 상대적 의결권 또는 지분율이 결합으로 인하여 변동되어서는 아니된다.
- (5-1)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 중 지배하는 주주가 명확하지 않고,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결합된 실체의 순자산과 영업활동을 지배하며, 결합참여회사의 경영진이 결합된 실체의 경영진에 참가하는 등의 기업결합에서는 매수회사를 파악할수 없다. 이와 같이 지분통합기업결합은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이 결합된 실체의 위험과 효익을 공동으로 분담하게 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 (5-2) 위험과 효익의 상호분담은 결합참여회사간에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등한 주식의 교환이 없이는 결합 참여회사 주주들간의 상대적인 의결권, 지분율 및 결합된 실체내에서의 상대적인 위험과 효익의 분담이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주식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중대한 제약이 없어야 한다.

- (5-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결합된 실체의 위험과 효익이 상호분담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합참여회사간에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지분통합거래로 볼 수 없다.
- 1) 결합참여회사간 순자산의 공정가액의 차이가 크거나 결합후 실체에 있어 각 결합참여 회사의 주주들간의 의결권 또는 지분율의 차이가 큰 경우
 - 2) 특정 결합참여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특혜를 주는 재무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 3) 결합된 실체의 주주 지분이 당해 주주들이 결합전에 지배하던 결합참여회사의 결합후 영업성과에 좌우되는 경우
- (5-4) “가”에서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의 90% 이상 여부는 지분통합일에 유통중인 보통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 매수원가

- 가. 매수원가는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또는 기타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을 말한다.
- 나. 매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직접비용은 매수원가에 포함한다.
- (6-1) 매수기업결합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취득하는 대가로 자산의 이전, 부채의 발생 또는 자본의 증가가 따른다는 점에서 개별자산의 구입과 유사하게 회계처리된다. 따라서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이 매수원가가 된다.
- (6-2) 매수대가의 일부로 발생한 부채는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액으로 한다. 다만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명목가액을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
- (6-3) 매수대가의 일부로 발행한 시장성 있는 주식의 공정가액은 매수일의 종가로 한다.
(2009. 12. 9 개정)
- (6-4) 주가의 등락이 심하여 일정시점의 종가를 공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일 직전 1개월간의 증가평균을 공정가액으로 본다. 다만 동 기간중에 권리락 등 주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매수일 직전일까지의 증가평균에 의한다.
(2009. 12. 9 개정)
- (6-5) 매수대가의 일부로 시장성 없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다음 중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액을 기초로 하여 공정가액을 추정한다.
(2009. 12. 9 개정)
- 1) 매수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교부한 지분율에 비례하는 금액
 - 2) 피매수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피매수회사 주식이 시장성 있는 경우 그 회사 주식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6-3)과 (6-4)를 준용한다.
(2009. 12. 9 단서신설)
 - 3) 규모나 업종, 위험도 등이 유사한 회사의 주가수익비율(PER), 배당수익률, 기대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금액
- (6-6) 매수회사의 주식이 액면미달 발행되는 경우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를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한다. 매수회사의 주식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한다.

- (6-7) 기업매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용에는 등록세, 회계사·변호사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매수업무담당부서의 유지비용이나 매수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기타 일반관리비용은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7.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인식 (기준서 제17호 참조)

- 가.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자산·부채 중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모든 자산·부채 (이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라 한다)는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인식 한다.
- 나. 매수회사의 의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채나 매수일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 매수회사 자체의 구조조정비용 또는 매수회사와 피매수회사의 통합비용은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일 이후 이행될 피매수회사의 사업폐쇄나 축소 및 기타 구조조정계획과 관련하여 매수회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총당금으로 계상한다.
- 1) 피매수회사의 사업폐쇄나 축소 및 기타 구조조정에 관한 계획의 주요 내용이 매수일 또는 그 이전에 결정·발표되어 그 계획이 실행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2) 매수일 이후 3월(매수가 이루어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작성일이 빠른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 작성일) 이내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이 마련되는 경우
 - (i) 관련 사업
 - (ii) 영향을 받는 주요 사업장
 - (iii) 계획실행과 관련된 인원감축으로 보상대상이 되는 종업원의 수, 담당업무 및 소속사업장
 - (iv) 계획의 시행시기
- 라. 총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비용은 다음에 한한다.
- 1) 피매수회사 종업원의 감축과 관련된 보상비용
 - 2) 피매수회사의 설비 및 생산라인의 폐쇄 관련비용
 - 3) 피매수회사가 체결한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매수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계약파기 비용
- (7-1)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는 피매수회사 대차대조표상 계상여부와는 관계없이 매수일에 존재하는 모든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포함한다.
- (7-2) 매수일 이후에 발생할 부채나 손실에 대하여는 총당금을 계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원칙이나 매수의 직접적 결과로서 피매수회사의 사업폐쇄나 구조조정 등과 관련하여 매수일에 매수회사의 부담이 되는 부채에 대하여는 총당금을 계상하고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부채의 일부로 본다.

8. 취득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결정 (기준서 제8호 참조)

가.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투자유가증권 포함)은 그 시가
 - (i) 발행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가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ii) 규모나 업종, 위험도 등이 유사한 회사의 주가수익비율(PER), 배당수익률, 기대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금액
- 2) 시장성 없는 주식은 다음 중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액
- 3) 매출채권, 대여금, 기타 채권(시장성 없는 채권 포함) 등은 채권금액에서 대손예상액 및 회수비용을 차감한 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다만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명목가액으로 할 수 있다.
- 4) 재고자산
 - (i) 제품 및 상품은 순실현가능가액에서 매수회사의 판매활동에 대한 정상이익을 차감한 금액
 - (ii) 재공품은 제품의 추정판매가액에서 재공품을 제품으로 완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원가와 제품의 판매비용 및 매수회사의 판매활동에 대한 정상이익을 차감한 금액
 - (iii) 원재료는 현행대체원가
-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은 시가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 중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
- 6) 퇴직급여충당금은 매수일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계액
- 7) 법인세관련 자산·부채는 매수로 인하여 결합된 실체의 예상손익 및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
- 8) 매입채무, 장기차입금, 미지급채무 및 기타 채무는 명목가액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다만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명목가액으로 할 수 있다.
- 9)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1)과 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나.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이 시가 이외의 방법으로 측정되는 경우 부의 영업권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8-1) 피매수회사의 무형자산 중 창업비 및 영업권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8-2) 법인세 관련 자산·부채는 피매수회사의 대차대조표에는 인식되지 않았으나 기업결합의 결과 이연법인세차·대로 인식할 수 있는 법인세 효과 등을 포함한다.

9. 영업권

가.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나.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라. 매수일에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 매결산기에 회수가가능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영업권의 회수가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감액된 영업권은 추후에 회복할 수 없다.
- (9-1) 영업권의 내용연수가 기간범위로 추정될 경우에는 그 범위 중 가장 짧은 기간을 선택하여야 한다.

10. 부의 영업권

- 가. 매수일에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중 매수 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 나. 부의 영업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1)에 해당하는 부의 영업권은 그 손실이나 비용이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경우에 인정한다.
 - 1) 매수일에 식별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는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의 영업권
 - 2) 기타의 부의 영업권
- 다.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미래의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의 영업권은 그 손실이나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한다. 다만, 당해 손실이나 비용이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기간내에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라”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라. 기타의 부의 영업권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회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비회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한다.
 - 2) 식별가능한 비회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매수일에 특별이익으로 인식한다.
- 마. 부의 영업권은 무형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 (10-1) 식별가능한 자산이 과대계상되거나 식별가능한 부채가 과소계상되면 부의 영업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의 영업권을 인식하기 전에 모든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10-2) 부의 영업권의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1) 매수일에 식별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는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또는 손실이 매수원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 2)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를 염가로 취득한 경우
- (10-3)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또는 손실과 관련된 부의 영업권은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추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매수계약서상 그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 (10-4) 기타의 부의 영업권은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보다 협상능력 등이 우위에 있어 피매수회사의 자산을 염가로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식별가능한 비회폐성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의 영업권(비회폐성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당해 비회폐성자산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이 유입됨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비회폐성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여 이익으로 인식한다.
- (10-5) 비회폐성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부의 영업권은 회폐성자산을 염가로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매수일 현재 이미 경제적 효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매수일에 일시 환입한다.

11. 연속적인 주식의 매입

- 가.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매수하는 경우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은 매수일에 일괄하여 인식한다.
- 나. 단계적으로 취득한 피매수회사 주식의 매수원가가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 지분해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 (11-1) 매수일 전에 피매수회사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매수원가는 매수일 직전 매수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동 주식의 장부가액과 매수일에 지급된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11-2) 피매수회사 주식과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계정)은 매수일에 속하는 회계연도에 손익으로 인식한다.
- (11-3) 매수일 전에 취득한 피매수회사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신주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자기주식으로 계상한다.

12. 우발상황에 대한 매수원가의 조정

- 가. 우발상황에 따라 매수대가를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일에 그 발생이 확실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매수일의 매수원가에 가산하여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을 조정한다.
- 나. 매수일 이후 피매수회사의 사업성파에 따라 추가적으로 매수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매수회사는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을 조정하여 매수원가를 수정한다.
- 다. 매수대가로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의 시장가격이 매수일 이후 하락함에 따라 당초에 결정된 매수원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매수원가를 조정하는 대신 당초에 발행된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가액을 조정한다.

13. 자산·부채의 후속적 식별 또는 가치의 변화 (기준서 제17호 참조)

- 가. 매수일 이후 식별가능한 자산·부채가 추가적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그 인식시점에

서 자산·부채로 계상한다. 매수일에 인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이 잘못 계상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시점에서 당해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수정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말 이전에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계상하거나 기존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수정하는 경우 상대계정으로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을 조정한다.

다. “가”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말 후에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계상하거나 기존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수정하는 경우 동 계상액 또는 수정액을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 또는 손실로 인식한다.

라. “7다”의 규정에 의하여 피매수회사의 사업폐쇄나 축소 및 기타 구조조정계획과 관련하여 계상한 총당금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정하고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을 조정한다.

- 1) 매수회사로부터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
- 2) 실행계획에서 정해진 방법과 일정에 따라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마. 수정후 영업권은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며, 수정후 부의 영업권은 “10라”의 부의 영업권 규정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한다.

(13-1) 매수일에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매수회사가 그 존재를 알지 못하여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동 자산·부채가 인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그 존재가 발견되는 시점에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로 인식한다. 또한 매수일 현재 계상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이 잘못 계상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수정하여야 한다.

14. 법인세 효과 (기준서 제 16호 대체)

가. 기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법과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부채의 일시적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연법인세차 또는 이연법인세대로 인식한다.

나. 매수회사가 매수일에 인식하지 아니한 일시적 차이에서 발생한 법인세 효과가 매수일 이후에 실현되는 경우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만 이 경우 부의 영업권은 증가시킬 수 없다.

- 1) 매수일에 동 이연법인세차를 식별가능한 자산으로 인식하였다면 계상되어야 할 영업권으로 수정한다.
- 2) 1)에 의해 계산된 영업권의 감소액은 비용으로 계상한다.

15. 재무제표의 작성

가. 매수연도의 재무제표는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나. 매수회사는 매수일로부터 피매수회사의 사업성과를 손익계산서에 포함시키며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자산과 부채 및 매수에 따른 영업권 혹은 부의 영업권을 대차대조표에 인식한다.

- (15-1) 비교목적으로 작성되는 전기의 재무제표에는 피매수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를 포함하지 않는다.

16. 지분통합의 회계처리

- 가. 결합참여회사의 자산·부채·자본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 다만 결합참여회사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였다면 결합된 실체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수정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승계하여야 한다.
- 나. 기업결합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의 형태로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한 자본 금액과 다른 경우 그 차이는 결합된 실체의 자본잉여금총액과 이익잉여금 총액에서 순서대로 조정한다.
- 다. 지분통합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발생연도의 기간비용으로 인식한다.
- 라. 지분통합이 이루어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비교목적으로 작성되는 전기의 재무제표는 전기에 이미 지분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여 작성한다.
- 마. 결합참여회사가 지분통합이 이루어진 회계연도 이전의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동 재무제표에 지분통합을 반영하여서는 안된다.
- (16-1) 지분통합의 본질은 회사간의 매수가 아니라 기업결합전에 개별적으로 존재하였던 위험과 효익을 결합하여 계속적으로 상호분담한다는 것이다. 지분통합법은 이러한 본질에 따라 결합참여회사가 결합 이후에도 결합전과 마찬가지로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결합참여회사의 자산·부채·자본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며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16-2) 결합참여회사의 이익잉여금과 결합참여회사로부터 승계한 자산·부채와 관련된 자본조정계정은 전액 승계한다. 다만 지분통합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이 결합참여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이는 결합된 실체의 자본잉여금 총액과 이익잉여금 총액에서 순서대로 차감한다. 지분통합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이 결합참여회사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는 결합된 실체의 자본잉여금에 가산한다.
- (16-3) 결합참여회사는 지분통합으로 단일 결합실체가 되며 그 실체는 통일된 회계처리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따라서 결합참여회사가 결합된 실체의 회계처리방법을 따르기 위하여 회계처리방법을 바꾸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다.
- (16-4) 지분통합일전이나 이후에 발생한 결합참여회사간 거래는 결합실체의 재무제표 작성시 상계제거된다.
- (16-5) 결합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신주식을 발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한다.

17.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

-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은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한다.

- (17-1)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 정하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회사를 말한다.
- (17-2)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시점에서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된다. 따라서 지배·종속관계 성립일 이후의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은 법률적 실체의 변경만을 가져올 뿐 경제적 실체의 변경은 없으므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한다.

18. 주식 공시 (기준서 제17호 참조)

가. 모든 기업결합에 대하여 결합이 이루어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주식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결합참여회사의 상호와 대표이사, 영업 개황 및 관계 등
- 2) 기업결합 회계처리방법
- 3) 기업결합일(매수일 또는 지분통합일), 기업결합계약체결일, 기업결합승인을 위한 주주 총회일
- 4) 기업결합의 결과 처분하기로 결정한 사업
- 5) 직전 회계연도 및 기업결합일까지 결합참여회사의 요약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나. 매수형식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결합이 이루어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추가로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매수 지분율
- 2) 매수원가와 우발성 매수대가의 내용
- 3) “7다”에 의한 피매수회사의 사업폐쇄나 축소 및 기타 구조조정비용과 관련하여 매수일에 인식한 총당금의 내용 및 금액
- 4) 매수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권 및 부의 영업권 금액

다. 지분통합형식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지분통합이 이루어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추가로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지분통합을 위하여 발행된 주식의 내용, 발행주식 총수, 획득한 의결권의 비율
- 2) 각 결합참여회사의 자산 및 부채
- 3) 기업결합후 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에 포함된 각 결합참여회사의 지분통합일까지의 매출액, 기타 영업수익, 특별손익 및 당기순손익

라. 영업권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공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상각기간
- 2) 영업권의 변동내용
 - i) 기초 금액
 - ii) 기중 증가된 금액
 - iii) 당기 중 상각한 금액
 - iv) 매수일 이후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추가적인 계상이나 그 장부가액의 변동으로 인한 수정액

- v) 당기에 인식한 감액손실
 - vi) 기말 금액 $[(i) + (ii) - (iii) \pm (iv) - v]$
- 마. 부의 영업권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공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미래의 손실 또는 비용과 관련된 부의 영업권의 성격과 금액 및 그 손실 또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 2) 미래의 손실 또는 비용과 관련없는 부의 영업권의 성격과 금액 및 환입기간
 - 3) 부의 영업권의 변동 내용
 - i) 기초 금액
 - ii) 기중 증가된 금액
 - iii) 당기 중 이익으로 환입한 금액
 - iv) 매수일 이후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추가적인 계상이나 그 장부가액의 변동으로 인한 수정
 - v) 기말 금액 $[(i) + (ii) - (iii) \pm (iv)]$
- 바.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또는 매수대가를 매수가 이루어진 회계연도말에 결정한다는 조건으로 매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i) 그 사실과 이유
 - ii) 동 조건부 공정가액이 후속적으로 수정될 경우에는 그 수정금액과 이유
- 사. 결합참여회사가 기업결합일(매수일 또는 지분통합일) 이전에 당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상기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19. 부칙 (2009. 12. 9)

- 가. 이 준칙의 ‘(6-3)~(6-5)’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009. 8. 28 신설)
- 나. 이 준칙의 ‘(6-3)~(6-5)’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준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적용할 수 있다. (2009. 8. 28 신설)
- 다. 이 준칙 ‘(6-3)~(6-5)’를 적용하기 이전에 발생한 매수에 대하여는 ‘(6-3)~(6-5)’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8. 28 신설)

2) 분할차익 (법 제17조제1항제4호)

① 분할차익의 익금불산입원칙

기업합병의 반대개념인 기업분할과정에서 차액이 계산되고 순자산증가 사항이 있더라도 이는 주주의 자본거래의 일종이 되므로 익금불산입한다. 여기서 익금불산입 분할차익은 분할신설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분할차익계정금액 중 분

할모법인의 자기자본 계정금액 변동차의 등을 말하며, 분할법인의 자산의 평가증차익도 익금불산입 사항이다.

② 분할자산의 평가증차익도 익금불산입함

분할차익 중 자산부채의 분할평가증차익은 순자산증가이므로 익금산입할 만하다. 이는 분할모법인의 자산 당초 취득가액이 분할되면서 분할법인에 정상시가로 계상되는 과정에서의 평가증차액인데, 정상시가로 계상된 금액은 향후 감가상각비나 자산매각·업무원가로 반영되므로 이에 대응되는 일시적 순자산증가 개념을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산증가액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상당액으 대응손금산입으로 당장의 과세는 지연하였다. 그러나 과세이연효과가 적고 투명한 기업거래에 있어 과세현실적이 적어 분할차익도 익금불산입으로 전면개정하였다.

③ 분할차익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계산사례

		분할전 법인			
자	산	200	부	채	100
(취득원가입)			자	본	금
(정상시가는 400)			잉	여	금
		<u>200</u>			<u>200</u>

분할거래시

- 자산 100(시가 200)을 분할
- 부채 50을 이전
- 납입자본 20 감자
- 잉여금 30 감소시키면서 신규자본금 발행

		분할 모법인 대차대조표			
자	산	100	부	채	50
			자	본	금
			잉	여	금
		<u>100</u>			<u>100</u>

- 자본금 20 감자
- 자기자본 30 감소(의체배당)

분할법인 대차대조표

자	산	200	부	채	50
			납	입	50
			분	할	100
			차	익	100
		200			200

-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소득 : 30(=50-20)
- 분할차익 고정자산평가증 100은 자산증액의 손익거래로 익금불산입됨.
- 분할차익 100에 대해 100의 손금산입 대응 △유보하여 과세는 이연시킴.

3. 출자전환 시가조과차액의 채무면제익 익금불산입 후 결손금과 상계 (법 제17조제2항)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경영정상화 계획을 작성한 모든 기업의 일시적 주식발행초과 차액은 당연 익금불산입이다. 그러나 시가보다 높게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의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익금사항인데 이러한 초과액도 채무 출자전환을 쉽게 하도록 해주기 위해 익금불산입후 나중에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과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채무면제익의 범위는 이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지 못한 채무면제익 금액으로서 회생계획인가 결정 법인, 부실징후기업 및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이행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주식발행정상시가를 초과한 전환액이 해당된다.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

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① 사업의 폐지·해산시 익금산입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금액을 익금불산입 후 결손금과 상계하기 전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 ⑤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6. 2. 9 신설)